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회사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마이다스 월드 In Best 증권 자투자신탁 1 호(주식-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다스 월드 In Best 증권 자투자신탁 1 호(주식-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마이다스 월드 In Best 증권 자투자신탁 1 호(주식-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09년 4월 2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09년 10월 1일
6. 모집(매출) 증권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추가형(개방형) 증권투자신탁으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http://www.midasasset.com>)
판매회사 및 협회(<http://www.kofia.or.kr>)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의 보증을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4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4
3. 모집(판매)예정금액	4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4
5. 인수에 관한 사항.....	4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5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6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6
4. 집합투자업자.....	6
5. 책임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8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2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3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5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8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0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21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24
1. 재무정보.....	24
2. 연도별 실적 및 환매현황.....	29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30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2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32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2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33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34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34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6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6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8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39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41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42
 [붙임] 용어풀이.....	 43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이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 코드
마이더스 월드 In Best 증권 자투자신탁1호 (주식-재간접형)	7531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모자형(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조좌까지 모집(판매)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다만 모집(판매) 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모집예정금액까지 계속 모집(판매)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별도의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판매) 가능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마이다스 월드 In Best 증권 자투자신탁1호 (주식-재간접형) (7531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7-10-26	운용 개시일
2009.04.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월드 In Best 주식 재간접 자투자신탁1호 ⇒ 마이다스 월드 In Best 증권 자투자신탁1호 (주식-재간접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하나증권빌딩 8층 (대표전화 : 02-3787-35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08.12.31 현재)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허필석	1967	본부장	22	12,080억	- 장기신용은행 - 마이다스에셋 주식운용(1999년 9월 ~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개수 : (1개), 운용 규모(350억원)

주1)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제로 운용되고 있으며, 주식 운용을 담당하는 주식운용본부가 운용합니다. 상기인은 주식운용 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 전문인력입니다.

주2) 상기 운용인력의 운용현황 수치에는 채권운용팀 운용 부분(5개 펀드, 55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영역	운영 기간
허필석	2007.10.26~현재

주1) 2008.12월 기준 최근 3년간의 책임운영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 투자신탁(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의 자투자신탁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포함된 모자형 투자신탁의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 별첨 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마이더스 월드 In best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마이더스 월드 In best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일반 가입자용)		신탁재산의 90% 이상 투자
마이더스 월드 In best 장기주택마련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용)		신탁재산의 90% 이상 투자
마이더스 월드 In best 연금저축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연금저축 가입자용)		신탁재산의 90% 이상 투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월드 In Best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형- 재간접형)	주요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 56%이상, 국내주식 44%이하
	투자목적	투자대상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재산의 56% 이상을 투자하며, 지역별, 국가별 테마별로 향후 성장성과 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해외 주식형 펀드 및 국내 우수펀드 등에 탄력적으로 분산 투자 - 주식은 적극적인 종목선택을 통하여 종합주가지수 이상의 수익을 추구 -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을 두어 개별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변동 위험을 제한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자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인 마이다스 월드 In Best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주식으로부터의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마이다스 월드 In Best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90% 이상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국내주식에 분산 투자
단기대출(30일)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 상품)	10% 이하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 운용

※ 상기 투자대상별 투자한도는 다음의 경우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

1) 모투자신탁,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에 대한 투자 한도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투자신탁 회계기간/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시 15일간
- 투자신탁 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15일간

※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아래의 투자대상은 주된 투자대상을 기재한 것으로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월드 In Best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집합투자증권	56% 이상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으로서 집합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지분증권	44% 이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합니다)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 모투자신탁 투자 제한

투자제한 중 일부만 기재한 것으로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집합투자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동일한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 제 1 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다만, 법 제 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 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수료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수료의 합이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증권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매매, 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1)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주식 재간접 모투자신탁 (마이다스 월드 In Best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자산의 90% 이상을 투자합니다. 투자 대상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국내 주식에 탄력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운용 전략으로 인하여 적절한 참고지수를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판단시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집합투자업자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아래의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은 중요사항을 요약해서 기재한 것으로 자세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에 대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모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56%이상을, 주식에 집합투자재산의 44% 이하를 투자하며, 각 부문의 운용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집합투자증권 투자전략

국내 또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56% 이상을 투자합니다. 해외주식 투자 집합투자기구 및 국내주식 투자 집합투자기구 등에 분산 투자하며, 지역별, 국가별, 테마별로 향후 성장성과 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시장에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운용전략은 크게 3 단계 과정을 통해 실행되며, 각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 단계: 글로벌 증시 분석을 통한 투자대상 지역/국가/테마 및 편입비 결정

[투자대상 국가-시장]

글로벌 증시분석 대상국가는 글로벌신흥시장 및 선진 태평양시장이 주 대상입니다. 즉,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대만, 태국 등 9 개 아시아신흥시장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 4 개 라틴신흥시장, 체코, 이집트, 헝가리, 이스라엘, 폴란드, 러시아, 남아공, 터키 등 8 개 신흥유럽·중동·아프리카시장, 호주, 홍콩,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5 개 선진태평양시장과 미국 등 총 27 개 시장을 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 지표]

분석지표로는 크게 거시경제 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모멘텀 지표 등 3 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습니다.

i. 거시경제지표

거시경제지표로는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금리, 산업생산증가율, 환율절상률, 경상수지의 GDP 비중 등 6 개 지표를 분석합니다.

[거시경제지표 설명]

지표	정의	의의 및 분석 방법/사례
GDP 성장률	GDP(국내총생산)는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치를 합산한 것으로 GDP 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 줌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GDP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이 촉진되고 있음을 뜻하므로 투자비중 상황의 근거가 됨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때 지불해야 하는 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통화정책 결정시 주요 참고가 되는 지표로 예상치 못한 변화는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통화정책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됨
기준 금리	각국별로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금리	통화당국이 경기상황 및 물가 등을 고려하여 금리를 올려 시중유동성을 흡수하기도 하고 반대로 금리를 내려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함.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은 주가 하락 요인, 금리인하는 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산업생산증가율	광공업의 생산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격변수를 제외한 물량기준으로 작성됨	경기변동상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로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격을 갖고 있어 예측과 실제치간 괴리가 발생할 경우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함
환율절상률	일정기간 자국통화가 미국 달러화 대비 어느 정도 가치가 변동했는지 나타냄	통화강세시에는 수입업체가 유리하며 통화약세시에는 수출업체가 유리함. 급격한 통화가치의 변동은 경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경상수지의 GDP 비중	경상수지가 GDP 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	경상수지 적자폭이 클 경우 외환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절대수치보다는 GDP 대비 비중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비교

ii. 밸류에이션 지표

밸류에이션 지표란 기업 실적 대비 주가의 저평가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주요 밸류에이션 지표로는 PER(Price Earning Ratio:주가수익비율), PBR(Price Book-value Ratio:주가순자산비율), ROE(Return On Equity:자기자본이익률), 배당수익률 등 4 개 지표를 분석합니다.

[밸류에이션지표 설명]

지표	정의	의의 및 분석 방법/사례
PER	주가수익비율(Price Earning Ratio)을 의미하며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	순이익대비 주가가 몇 배에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며, 수치가 적을수록 기업이 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음을 나타냄
PBR	주가순자산비율(Price Book-	장부가대비 주가가 몇 배에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며, 수치

	Value Ratio)을 의미하며 주가를 기업의 주당장부가로 나눈 수치	가 적을수록 기업의 청산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음을 나타냄
ROE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을 말하며 기업의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수치	투자된 자본에 대비하여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를 설명하며,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를 표시
배당수익률	기업의 주당 배당 금액을 주가로 나눈 수치	해당 기업에 투자시 배당을 통해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표시

iii. 모멘텀 지표

모멘텀 지표로는 EPS(Earning Per Share:주당순이익)성장률, EPS 성장모멘텀, ERR(Earning Revision Ratio:수익추정변경비율) 등 3 개 지표를 분석합니다.

[모멘텀 지표 설명]

지표	정의	의의 및 분석 방법/사례
EPS 성장률	EPS 는 주당순이익(Earning Per Share)을 의미하며 기업의 당기 순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수치임	EPS 성장률은 기업의 주당순이익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성장하는가를 나타내며, EPS 성장률이 높을수록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평가, 투자비중 확대
EPS 성장모멘텀	18 개월 예상 EPS 성장률에서 12 개월 예상 EPS 성장률을 차감한 수치	1 년 후 6 개월간 기업이익의 증가 추세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가의 선행성을 고려하여 1 년 후에 나타날 기업 이익의 성장성을 추정해봄으로써 주가의 상승 탄력을 예측해보고자 하는 지표
ERR	수익추정변경비율(Earning Revision Ratio)을 의미하며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 중 EPS 상황 건수에서 EPS 하향건수를 차감한 수치를 전체 실적예상건수로 나누어 계산	애널리스트의 실적추정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나타냄. 애널리스트의 실적추정치가 상향건수가 늘어나면 앞으로 기업실적이 현재 예상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투자대상 지역/국가/테마를 선정하고, 각 투자대상 지역/국가/테마의 목표 편입비중을 결정합니다.

② 제 2 단계: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선정

둘째 단계는 선정한 지역/국가/테마에 투자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을 조사하여 적합한 투자 대상 집합투자기구를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복수의 대상 집합투자기구가 있을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철학 및 투자 프로세스, 투자경험, 과거 운용실적, 운용 스타일의 적합성, 수수료 및 보수를 고려하여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를 선정합니다.

③ 제 3 단계: 투자비중 결정 및 투자 집행

셋째 단계에서는 이 신고서 상의 투자제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각 투자대상의 투자비중을 최종 결정하고 실제로 투자를 집행하게 됩니다.

나) 주식 투자전략

집합투자재산의 44%이하 범위 내에서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자본이익 및 배당소득을 추구합니다.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는 적극적인 종목선택을 통하여 종합주가지수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매매거래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 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인 마이더스 월드 In Best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모투자신탁의 손익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이 결정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구조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 투자신탁으로, 직·간접적 투자대상인 국내외 주식의 가격 등락이 투자 손익을 결정하는 주요인입니다. 즉, 투자하는 국내외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며,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합니다. 한편 투자대상 주식으로부터의 배당 수익, 채권 및 유동성자산 투자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도 투자신탁 수익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 별첨 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등의 가격변동위험 (시장위험)	주식시장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그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개별기업 성과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하게 되므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부변수들의 변화는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등의 가격변동위험 (종목위험)	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간접 투자하는 개별주식은 해당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되므로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기업의 가치보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만, 회사의 판단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투자손실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환율 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관련 위험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초 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헷지전략과 자산배분전략을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하게 움직일 경우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가격은 채권의 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 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신용위험	채무불이행 위험은 채권의 발행주체가 현금흐름의 부족으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회수완료 시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됨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특수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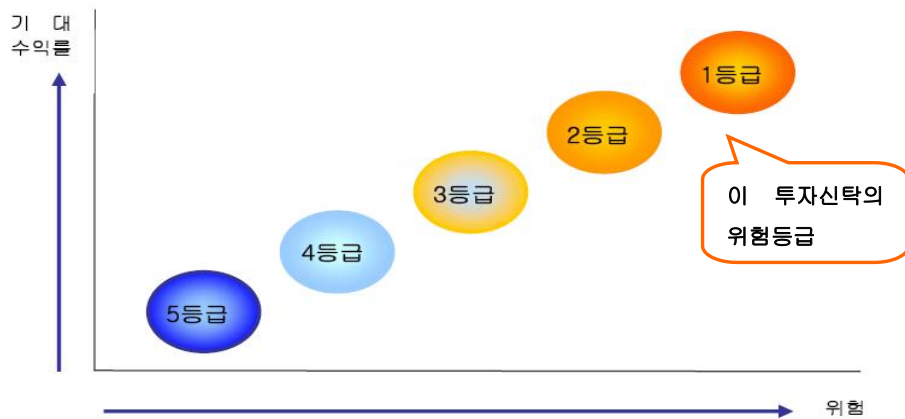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해외 주식 간접 투자로 인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세계 각국(신흥시장 포함)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며,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국가의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의 주식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위험	국내 주식 투자시 적극적인 종목선정을 통하여 주식시장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실적이 주식시장의 변화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현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시점과 환매대금이 확정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시장상황 변동으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이 투자자가 환매청구시점에 예상한 순자산가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의 위험	이 투자신탁이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없이 지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게 되는 주식-재간접형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및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5등급의 위험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주식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투자고객에게 적합합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투자신탁이나,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 등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자체 투자위험등급 기준예시>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 이상 투자하며, 주식시장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운용전략을 사용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기구(원금 보존 추구형 제외)
2등급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 이상 투자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투자위험을 축소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집합투자기구 ■ 주식시장 수준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덱스 운용전략을 사용하는 집합투자기구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 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30% 이하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기구(원금 보존 추구형)
4등급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채 등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F

주1) 상기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은 마이다스에셋의 내부 기준에 대한 예시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위험등급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등과 같은 일부 장기투자 목적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기간 적립식으로 투자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에 따라 상기 기준과 상이한 투자위험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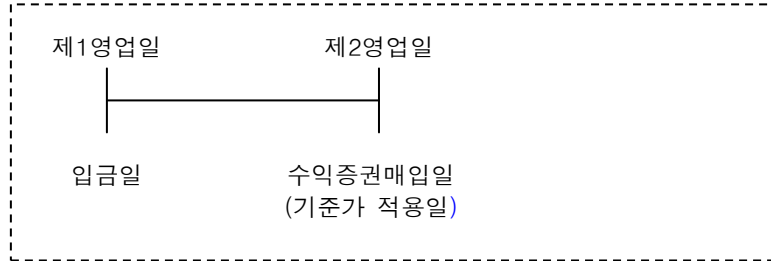
가. 매입

(1) 매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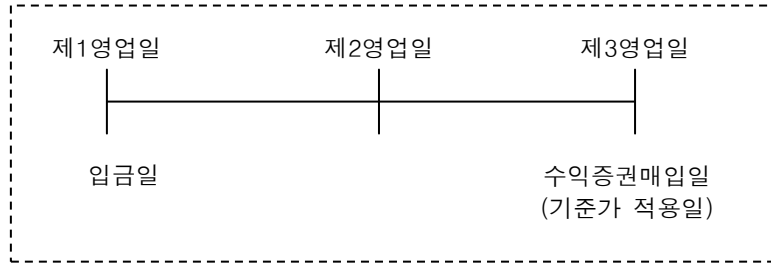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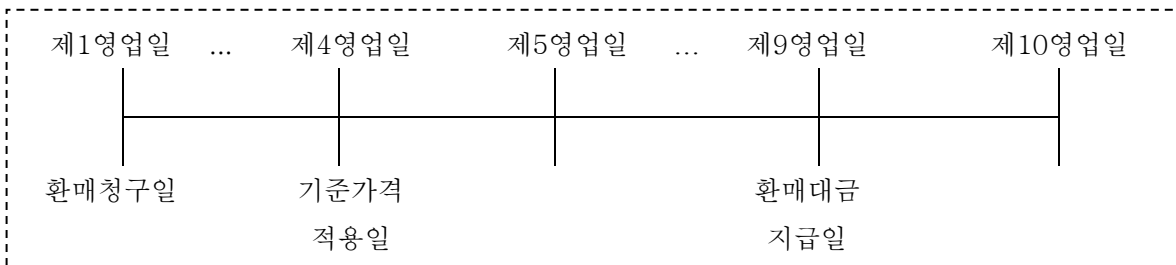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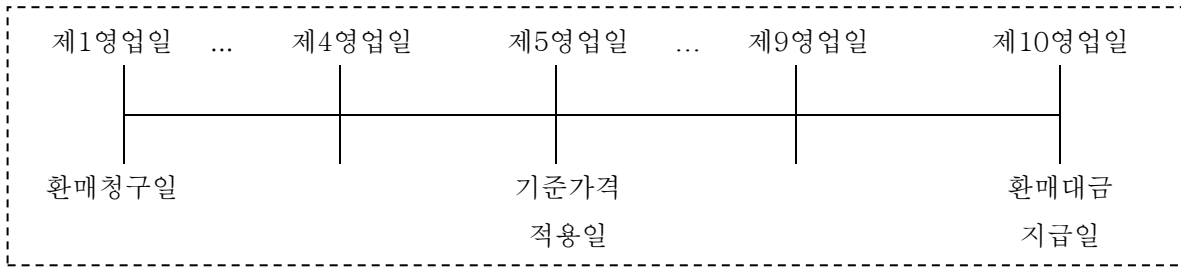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D+9)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3)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지급비율(%)	비고 (지급시기)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30일 이상	이익금의 30%	환매시
	90일 미만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7영업일 전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8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9) 빈번한 환매와 관련한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은 가입시에 정액의 선취 판매수수료가 부과되며, 가입 후 조기 환매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지나치게 빈번하게 환매할 경우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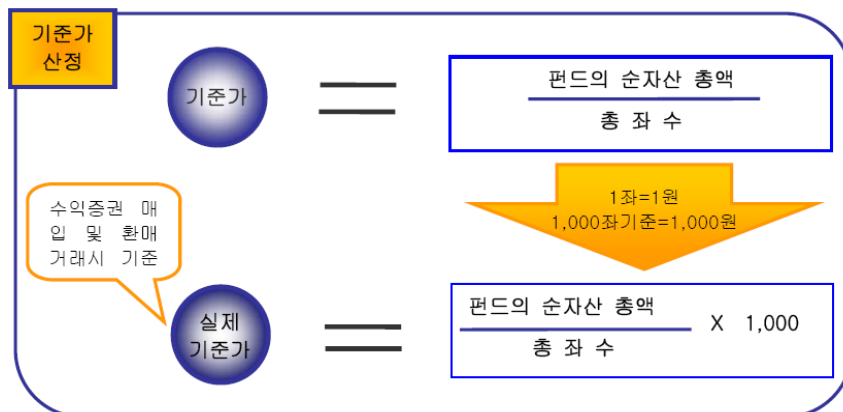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midasasset.com)·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주2)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절차도 상기 내용과 동일합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모집합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마이더스 월드 In Best 증권 자투자신탁 1 호(주식-재간접형)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이내 주 1)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90 일 미만 환매시
환매수수료	-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 이상~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주 1) 납입금액의 1%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 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주 2) 수수료를 차등화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판매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마이더스 월드 In Best 증권 자투자신탁 1 호(주식-재간접형)	
수익자의 자격	제한없음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55%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연 0.70%	
신탁업자 보수	연 0.03%	
일반사무관리보수	연 0.02%	
기타 비용	연 0.15%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연 1.45%	-
증권 거래비용	연 0.15%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08.10.25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2008.10.25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수수료와 콜수수료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만원)

구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마이더스 월드 In Best 증권 자투자신탁 1 호 (주식-재간접형)	26.14	61.09	99.62	214.14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보수 차감 전 기준),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

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두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모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마이더스 월드 In Best 증권 자투자신탁 1호 (주식-재간접형)	마이더스 월드 In Best 장기주택마련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마이더스 월드 In Best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이내 주1	-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	90일미만 환매시
환매수수료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90일 미 만: 이익금의 30%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없음	환매시

주1) 납입금액의 1%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주 2) 수수료율 차등화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판매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마이더스 월드 In Best 증권 자투자신탁 1호 (주식-재간접형)	마이더스 월드 In Best 장기주택마련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마이더스 월드 In Best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수익자의 자격	제한없음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연금저축 가입자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55%		연 0.5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연 0.70%	연 1.30%	연 1.20%	
신탁업자 보수	연 0.03%			
일반사무관리보수	연 0.02%			
기타 비용	연 0.15%	연 0.09%	연 0.10%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연 1.45%	연 1.99%	연 1.85%	-
증권 거래비용	연 0.15%			사유발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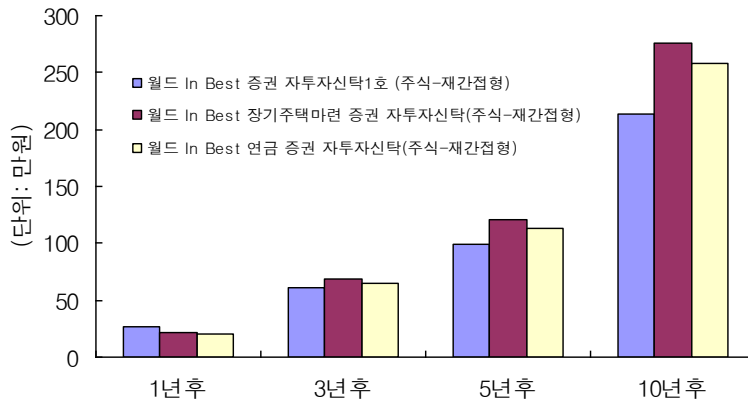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08.10.25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2008.10.25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수수료와 콜수수료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만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마이다스 월드 In Best 증권 자투자신탁 1호 (주식-재간접형)	26.14	61.09	99.62	214.14
마이다스 월드 In Best 장기주택마련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1.94	69.15	121.20	275.90
마이다스 월드 In Best 연금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50	64.63	113.28	257.85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보수 차감 전 기준), **판매수수료율은 1%**,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판매회사가 정하는 실제 판매수수료율 수준**,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

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

-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모 최소투자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단, 소수투자자가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95% 이상 소유시 면제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의 기금만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기준가와 별도로, 과세대상 손익만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과표기준가를 별도로 공시하고 이를 과세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나)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손실이 더 큰 경우 (※ 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2부 별첨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1) 마이다스 월드 In Best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자산의 대부분을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에 투자하여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집합투자증권	56% 이상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으로서 집합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지분증권	44% 이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채권	50% 이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제외함)
자산유동화증권	5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5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및 국내에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

주식및채권 관련장내파 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15% 이하(헤지 또는 헤지 외 목적)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식선물, 주가지 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 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증권의 대 여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외 대여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보유 채권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란 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증권의 차 입	20%이하	상기의 지분증권, 국내주식, 채권, 어음, 자산유동화증권의 차입
신탁업자 고유재산과 의 거래		법 시행령 2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에 한함
기타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이내인 상품에 한함)	

※ 상기 투자대상별 투자한도는 다음의 경우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

1) 집합투자증권, 지분증권,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대한 투자 한도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투자신탁 회계기간/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시 15일간
- 투자신탁 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15일간

2) 장내파생상품, 증권외 대여,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증권외 차입에 대한 투자한도

-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과시 3개월까지
투자한도 적용 유예
-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투자한도 적용 유예
-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 유예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

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동일한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제 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 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수료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수료의 합이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원에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채증권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 투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p>의 상황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매매,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p>○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p>	
<p>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p>	<p>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파생상품 매매</p>	<p>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p> <p>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p> <p>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자산 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p>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계열회사 발행 주식	법 시행령 제 86 조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 189 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86 조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 시행령 제 86 조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집합투자자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상기 투자 제한은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 초과시 3개월까지 그 적용을 유예합니다(단기대출, 계열회사 발행 주식, 후순위채권 투자제한 제외)

3.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1)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56%이상, 주식에 집합투자재산의 44% 이하를 투자하며, 각 부문의 운용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집합투자증권 투자전략

국내 또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56% 이상을 투자합니다. 해외주식 투자 집합투자기구 및 국내주식 투자 집합투자기구 등에 분산 투자하며, 지역별, 국가별, 테마별로 향후 성장성과 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시장에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운용전략은 크게 3 단계 과정을 통해 실행되며, 각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④ 제 1 단계: 글로벌 증시 분석을 통한 투자대상 지역/국가/테마 및 편입비 결정

[투자대상 국가-시장]

글로벌 증시분석 대상국가는 글로벌신흥시장 및 선진 태평양시장이 주 대상입니다. 즉,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대만, 태국 등 9 개 아시아신흥시장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 4 개 라틴신흥시장, 체코, 이집트, 헝가리, 이스라엘, 폴란드, 러시아, 남아공, 터키 등 8 개 신흥유럽·중동·아프리카시장, 호주, 홍콩,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5 개 선진태평양시장과 미국 등 총 27 개 시장을 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 지표]

분석지표로는 크게 거시경제 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모멘텀 지표 등 3 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습니다.

i. 거시경제지표

거시경제지표로는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금리, 산업생산증가율, 환율절상률, 경상수지의 GDP 비중 등 6 개 지표를 분석합니다.

[거시경제지표 설명]

지표	정의	의의 및 분석 방법/사례
GDP 성장률	GDP(국내총생산)는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치를 합산한 것으로 GDP 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 줌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GDP 성장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이 촉진되고 있음을 뜻하므로 투자비중 상향의 근거가 됨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때 지불해야 하는 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통화정책 결정시 주요 참고가 되는 지표로 예상치 못한 변화는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통화정책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됨
기준 금리	각국별로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금리	통화당국이 경기상황 및 물가 등을 고려하여 금리를 올려 시중유동성을 흡수하기도 하고 반대로 금리를 내려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함.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은 주가하락 요인, 금리인하는 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산업생산증가율	광공업의 생산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격변수를 제외한 물량기준으로 작성됨	경기변동상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로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격을 갖고 있어 예측과 실제치간 괴리가 발생할 경우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함
환율절상률	일정기간 자국통화가 미국 달러화대비 어느 정도 가치가 변동했는지 나타냄	통화강세시에는 수입업체가 유리하며 통화약세시에는 수출업체가 유리함. 급격한 통화가치의 변동은 경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경상수지의 GDP 비중	경상수지가 GDP 의 몇 % 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	경상수지 적자폭이 클 경우 외환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절대수치보다는 GDP 대비 비중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비교

ii. 밸류에이션 지표

밸류에이션 지표란 기업 실적 대비 주가의 저평가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주요 밸류에이션 지표로는 PER(Price Earning Ratio;주가수익비율), PBR(Price Book-value Ratio;주가순자산비율), ROE(Return On Equity;자기자본이익률), 배당수익률 등 4 개 지표를 분석합니다.

[밸류에이션지표 설명]

지표	정의	의의 및 분석 방법/사례
PER	주가수익비율(Price Earning Ratio)을 의미하며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	순이익대비 주가가 몇 배에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며, 수치가 적을수록 기업이 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음을 나타냄
PBR	주가순자산비율(Price Book-Value Ratio)을 의미하며 주가를 기업의 주당 장부가로 나눈 수치	장부가대비 주가가 몇 배에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며, 수치가 적을수록 기업의 청산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음을 나타냄
ROE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을 말하며 기업의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수치	투자된 자본에 대비하여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를 설명하며,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를 표시
배당수익률	기업의 주당 배당 금액을 주가로 나눈 수치	해당 기업에 투자시 배당을 통해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표시

iii. 모멘텀 지표

모멘텀 지표로는 EPS(Earning Per Share;주당순이익)성장률, EPS 성장모멘텀, ERR(Earning Revision Ratio;수익추정변경비율) 등 3 개 지표를 분석합니다.

[모멘텀 지표 설명]

지표	정의	의의 및 분석 방법/사례
EPS 성장률	EPS 는 주당순이익(Earning Per Share)을 의미하며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수치임	EPS 성장률은 기업의 주당순이익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성장하는가를 나타내며, EPS 성장률이 높을수록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평가, 투자비중 확대
EPS 성장모멘텀	18 개월 예상 EPS 성장률에서 12 개월 예상 EPS 성장률을 차감한 수치	1 년 후 6 개월간 기업이이익의 증가 추세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가의 선행성을 고려하여 1 년 후에 나타날 기업이이익의 성장성을 추정해봄으로써 주가의 상승 탄력을 예측해보고자 하는 지표
ERR	수익추정변경비율(Earning Revision Ratio)을 의미하	애널리스트의 실적추정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나타냄. 애

	<p>며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 중 EPS 상향건수에서 EPS 하향건수를 차감한 수치를 전체 실적예상건수로 나누어 계산</p>	<p>널리스트의 실적추정치가 상향건수가 늘어나면 앞으로 기업실적이 현재 예상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p>
--	---	---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투자대상 지역/국가/테마를 선정하고, 각 투자대상 지역/국가/테마의 목표 편입비중을 결정합니다.

⑤ 제 2 단계: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선정

둘째 단계는 선정한 지역/국가/테마에 투자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들을 조사하여 적합한 투자 대상 집합투자기구를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복수의 대상 집합투자기구가 있을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철학 및 투자 프로세스, 투자경험, 과거 운용실적, 운용 스타일의 적합성, 수수료 및 보수를 고려하여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를 선정합니다.

⑥ 제 3 단계: 투자비중 결정 및 투자 집행

셋째 단계에서는 이 신고서 상의 투자제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각 투자대상의 투자비중을 최종 결정하고 실제로 투자를 집행하게 됩니다.

라) 주식 투자전략

집합투자재산의 44%이하 범위 내에서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을 추구합니다.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는 적극적인 종목선택을 통하여 종합주가지수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매매거래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 파생상품 투자전략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보유자산의 위험 헤지 또는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국내 주식에 탄력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운용 전략으로 인하여 적절한 참고지수를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판단시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집합투자업자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위험 관리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 투자신탁으로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 주식 및 관련파생상품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개별 주식, 파생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 종목 투자한도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투자는 국내법에 의해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직접적인 외환관련손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국내법에 의해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시 외환위험 관리를 위한 별도의 환헤지전략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해외투자 집합투자증권에서는 외환관련손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 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 투자신탁으로, 직·간접적 투자대상인 국내외 주식의 가격 등락이 투자 손익을 결정하는 주요인입니다. 즉, 투자하는 국내외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며,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합니다. 한편 투자대상 주식으로부터의 배당 수익, 채권 및 유동성자산 투자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도 투자신탁 수익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선진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1기의 각각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목	제1기 2008-10-25
운용자산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실물자산	
현금 및 예치금	33,843,092
기타 운용자산	841,365,799
기타자산	
자산총계	875,208,891
운용부채	3,939,527
기타부채	
부채총계	3,939,527
원본	1,685,401,800
수익조정금	
이익잉여금	-814,132,436
자본총계	871,269,364
손익계산서	
항목	제1기 2007-10-26~2008-10-25
운용수익	.
이자수익	.
배당수익	1,561,810.
매매/평가차익(손)	-769,179,113.
기타 수익	53,395.
운용비용	.
관련회사 보수	17,103,037.
매매수수료	36,590.
기타 비용	1,717,800.
당기순이익	-786,421,335.
매매회전율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항목	제 1 기
	2008-10-25
자산총계	875,208,891
예금	33,734,688
콜론	
정기예금	
어음	
REPO매수	
주식	
신주인수권증권	
ELS/EWS	
채권	
수익증권	841,365,799
대여주식(자산)	
차입(자산)	
미수금	
미수배당금	
미수이자	108,404
미수수료	
선급비용	
선납원천세	
부가가치세	
선급원천세	
미수위탁증거금	
증거금	
무형자산	
보증금	
대여금	
기타자산	
콜옵선매입	
장외파생매입	
풋옵선매입	
옵션미수입금	
선물매입	
선물미수입금	
이자율스왑	
실물자산	

선급금	
부채총계	3,939,527
차입금	
보증금	
미지급금	
미지급수수료	2,750
미지급주식납입금	
미지급이익분배금	
미지급해지금	
미지급투자신탁보수	3,936,777
기타미지급비용	
미지급인건비	
예수원천세	
REPO미지급이자	
미지급원천세	
선수수익	
기타부채	
미인출해지금	
미인출보수	
대여자산(부채)	
콜옵션매도	
풋옵션매도	
옵션미지급금	
선물매도	
선물미지급금	
REPO매도	
REPO증거금	
이자율스왑	
신탁안정조정금총계	
신탁안정조정금	
원본총계	871,269,364
원본	871,269,364
합계계정	
신탁재산총액	871,269,364
대차대조표순자산총액	871,269,364
유가증권평가손익	
신탁재산순자산총액	871,269,364
잔존좌수	1,685,401,800
기준가격	517

과표기준가격	1,021
FULL 기준가격	
부외계정	
헷지관련비용	
NAV(헷지비용제외)	
기준가격(헷지제외)	
외화기준가격	
외화과표기준가격	
외화비거주자과표기준가격	
외화좌수	
외화원본	
외화순자산총액	
외화과표순자산총액	
외화비거주자과표순자산총액	

다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항목	제1기
	2007-10-26~2008-10-25
손실총계	839,585,982.
유가증권매매손실	820,727,827.
옵션매매손실	.
선물매매손실	.
선물정산손실	.
선물환매매손실	.
스왑정산손실	.
외환차손	.
REPO지급이자	.
상환손실	.
기타손실	.
지급수수료	36,590.
투자신탁보수	17,103,765.
기타비용	1,717,800.
설정해지조정금손실	.
대손상각비	.
중간배당금지급	.
이익분배금	.
이월결손금보전액	.
신탁안정조정금적립액	.
무형자산상각	.
인건비	.
인건비(소계)	.
제세공과금	.
제세공과금(비과세)	.
제세공과금(과세)	.
지급보험금	.
이익총계	53,255,906.
유가증권매매이익	51,550,934.
옵션매매이익	.
선물매매이익	.
선물정산이익	.
선물환매매이익	.
외환차익	.
상환이익	.

기타이익	53,395.
배당수익	.
수입이자	1,562,063.
수입수수료	89,514.
인수수료	.
설정해지조정금이익	.
대손상각비환입	.
신탁안정조정금환입액	.
보험료수익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7-10-25 ~2008-10-25			18	18	2	1	17	9

* 상기 설정 및 환매 내역 중 기간별 재투자로 인한 좌수 변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연도	최근 1년 (08.01.01~ 08.12.31)	설정일 이후 (07.10.26~ 08.12.31)
월드 In Best 증권자 1	-42.24%	-3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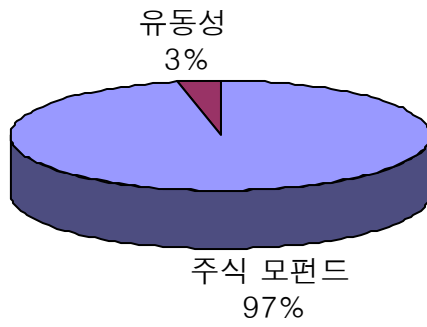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도	최근 1년차 (08.01.01~ 08.12.31)
월드 In Best 증권자 1	-4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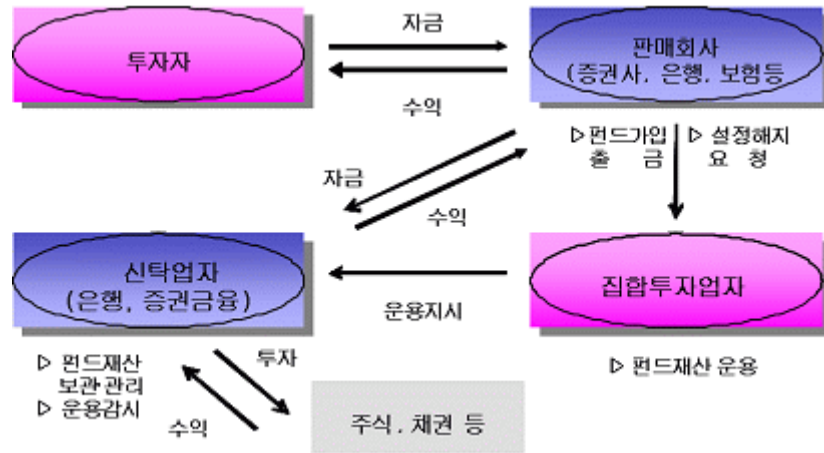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08.12.31. 기준, 단위: 백만원)

통화 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 산	특별자산		단기대 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 외		실물 자산	기 타			
KRW	0.	0.	0.	939.	0.	0.	0.	0.	0.	32.	0.	971.
합계	0.	0.	0.	939.	0.	0.	0.	0.	0.	32.	0.	971.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연락처 : 02-3787-3589, www.midasasset.com)
회사 연혁	1999.02.01 회사설립등기(납입자본금 70 억원) 1999.03.10 자산운용업 등록(금융감독위원회) 1999.07.07 상호변경: 마이다스자산운용주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2004.02.01 무상증자(납입자본금 100 억원)
자본금	100 억원
주요주주현황	현희현 (10%), 이재관(10%) 등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08.3.31	'07.3.31	항 목	'08.3.31	'07.3.31
현금및예치금	144	100	영업수익	282	239
기타자산	304	237	영업비용	110	95
자산총계	448	337	영업이익	173	144
예수부채	9	10	영업외수익	0	0
기타부채	37	37	영업외비용	2	0
부채총계	45	46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71	144
자본금	100	100	법인세비용	48	40
잉여금	301	193	당기순이익	123	10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	-2			
자본총계	403	291			

라. 운용자산 규모(2008.12.31 현재 / 억원)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계
	주식	채권	ELS					
수탁고	19,450	1,618	13,094	3,343	128	-	-	37,634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농협중앙회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1가 75 ☎ 02)1588-2100
홈 페이지	www.nonghyup.com
회 사 연 혁	1961년 농협중앙회 발족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 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SC제일펀드서비스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 02-2014-2000
홈 페이지	www.scfirstfundservices.co.kr
회 사 연 혁	1999년 설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채권평가	KIS채권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 02-3215-1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 02-399-3350

홈 페이지	www.koreabp.com	www.bond.co.kr
회사 연혁	2000년 설립	2000년 설립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④ 투자신탁의 합병
 - ⑤ 투자신탁의 환매연기 발생시 후속 조치
 - ⑥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⑦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
 - ⑧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제42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⑨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⑩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⑪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생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각 자투자신탁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들의 의결권 행사 내용에 비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반대매수청구권

상기 (1)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216 조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의 합병
5.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6.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
7.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제 420 조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9.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10.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midasasset.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게 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 262 조 제 1 항 후단에 따라 공고, 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주식	1. 평가방법 매월 각 위탁매매 대상 중개회사를 평가하여 점수화한 후 순위별로 위탁매매 배정 2. 평가주체 : 주식운용역 3. 평가항목 시황관련 정보제공 등 운용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지원활동과 매매체결의 신속/정확성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

	하계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채권	1. 평가방법 매분기 중개회사에 대해 선정된 항목에 따라 정성 평가하고,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중개회사의 순위 결정/ 각 중개회사별 점수를 기준으로 위탁 매매 배정 2. 평가주체 : 채권운용역 3. 평가항목 시장상황 및 호가의 정확성, 거래체결 빈도, Research 자료제공 여부, Back Office 업무처리 능력

주1) 매매대가 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6 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 가. 신탁업자
 -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http://www.midasasset.co.kr/company/com03_07.aspx)
4. 간이투자설명서
5.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등록신고서 사본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 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u>의결권</u> 의 3 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 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말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